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大韓民國憲法	대한민국 헌법
前文	전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u>4·19民主理念</u>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u>타파하며</u>,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u>各人의 機會</u>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u>향상을 기하고</u>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u>우리들과</u>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u>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u>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u>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u>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u>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u>,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u>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u>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u>향상과 지역 간 균</u>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신 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

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신 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

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

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신 설>

<신 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

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

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
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 ·
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
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
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
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
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
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
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
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
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
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
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
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
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
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
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
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の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신 설>

第12條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の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罣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罣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폭행・협박・부당한

·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 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삭 제>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
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

<신 설>

<신 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삭 제>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言論・出版에 대한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許可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
다.

④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
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
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22條 ①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

<삭 제>

②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
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
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
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
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
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

術의 自由를 가진다.

<신 설>

②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
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
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行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
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
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
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

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
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
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
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
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
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
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
을 보장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

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 모든 국민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국민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哨兵),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等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正當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正當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삭 제>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 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 모든 국민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保障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신 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國家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國家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사자(義

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신 설>

第33條 ①勤勞者は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신 설>

②公務員인 勤勞者は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

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國家는 모든 國民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

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신 설>

<신 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
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
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

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
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
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
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
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
호해야 한다.

<삭 제>

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
의 尊嚴과 兩性の 平等을 기초
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の 보호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
由와 權利의 本質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
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는 이를 보장한다.

<삭 제>

<삭 제>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
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신 설>

②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신 설>

하는 바에 따라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構成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現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現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の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和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수 있다.

②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53條①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
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
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
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
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
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
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
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
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
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
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
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
府에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大

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大統領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
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
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
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
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
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
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
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
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 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

의 계속
<신 설>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

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
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政府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國會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國會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國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政府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國會는 政府의 동의 없이 政府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國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政府는 미리 國會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로 정한다.

제64조 ① 國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國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國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第62條 ①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 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 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 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

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 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 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の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

사하며,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民事상 또는 刑事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第1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신 설>

<신 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 總數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의 3分の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신 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득표하지 않으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⑥ 大統領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⑦ 大統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서 맡은 職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4조 大統領의 임기는 4年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5조 ① 大統領이 醜位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國무총리, 법률로 정한 國무위원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행한다.

② 大統領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大統領은 그 사정을 國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權限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通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通報가 없는 경우 權限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國무총리가 國무회의의 審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申請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權限대행의 지위는 大統領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通報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

<신 설>

<신 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

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

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の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の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

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
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
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
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
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
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
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
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
上の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需要가 있
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
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
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
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
社の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
때부터 效力을 상실한다. 이 경
우 그 명령에 따라 개정되었거
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
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
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
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安寧질서를 유
지할 需要가 있을 때에는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
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
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

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

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大統領은 지체 없이 國會에 통고해야 한다.

⑤ 國會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大統領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82조 大統領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을 임면(任免)한다.

제83조 ① 大統領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國會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大統領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5조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

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の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할 수 있다.

제86조 大統領의 國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大統領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大統領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大統領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삭 제>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
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
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
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
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
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
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
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
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삭 제>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
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
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
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
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
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
명될 수 없다.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은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은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신 설>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大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大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계획과 政府의 일반 政策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에 중요한 對外 政策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大통령령안
4. 大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國有財産 처분의 基本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될 <u>契約 기타 財政</u>에 관한 중 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 政經濟處分 및 <u>命令 또는 戒 嚴과 그 解除</u>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u>臨時會 集會의 요구</u>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の <u>權限의 劃定</u> 11. 政府안의 <u>權限의 委任</u>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u>중요한 政策의</u>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u>제출 또는 회부된 政 府의 政策에</u>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 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 長・大使 <u>기타 法律이</u>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u>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u>	계약, <u>그 밖에</u> 재정에 관한 중 요 사항 6. 大統領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u>명령, 계엄의 선포 와 해제</u>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u>임시회 요구</u> 9. 영전 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u>권한</u> 확정 12. 정부 안의 <u>권한 위임</u> 또는 배 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 석 14. 행정각부의 <u>중요 정책</u> 수립 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u>제출되거나</u> 회부된 <u>정부 정책에</u>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u>그 밖에 법률로</u> 정한 공 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u>그 밖에</u> 대통령・국무총리나
--	---

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신 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부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
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부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
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
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
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
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
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
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제4절 행정각부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
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
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定한다.

第5章 法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후단 신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신 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신 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

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の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삭 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신 설>

<신 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關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신 설>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지 않는 범위에서 審判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

第7章 選舉管理

第114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
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干涉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

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
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
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
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大統領이 임명하는 3명, 國會에서 選出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選出하는 3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干涉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 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 選舉運動은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지방의회는 地方自治法에 違反되지 않는 範圍에서 住民의 자치와 福利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第9章 經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第120條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 · 水産資源 · 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 · 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の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여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③ 國家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國家는 국토와 資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國家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8조 ① 國家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신 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の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國家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國家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國家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신 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の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신 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③ 國家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國家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國家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1조 ① 國家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生産品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國家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32조 國家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國防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

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 國家는 國民경제의 발전과 國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國家는 國家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

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
은 在籍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
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불
여 國會議員選舉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
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
여야 한다.

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
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
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
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
해야 한다.